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제2020-296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(안) 입법예고 2

● 고 시

제2020-42호 :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고시 4

제2020-43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구역 고시 6

제2020-44호 :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8

제2020-45호 :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9

● 공 고

제2020-302호 :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10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자 치 법 규

[입법예고]

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96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4월 16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(안) 입법예고

1. 제정 이유

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 예방·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2조)

-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함
-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

나.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)

-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
-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 심의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감사담당관, 전화 : 02-3396-4415, E-mail : cya83@junggu.seoul.go.kr)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
제3조(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)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.

- 1.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
- 2.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-42호

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고시

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따라 감염병(코로나19) 예방을 위해 관내 아래장소에서의 집합을 금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4월 9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- 1. 금지장소 : 장충단로(오간수교~장충체육관), 동대문 DDP 주변 도로, 장충체육관 주변 도로, 장충단공원 주변 도로, 충무아트센터 주변 도로
- 2. 고시근거 :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

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- 3. 적용기간 : 2020. 4. 9.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시까지
- 4. 금지내용 : 금지장소 내 일체의 집회
- 5. 벌칙조항 :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

제80조(벌칙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6. 시행일 :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붙임 : 집회 금지구역 현황도 1부

붙임 집회금지구역 현황도

집회 금지구역 현황도



장충단로(오간수교~장충체육관)

동대문 DDP 주변도로

장충체육관 주변도로, 장충단공원 주변도로

충무아트센터 주변 도로

● 서울특별시증구고시 제2020-43호

서울특별시 증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구역 고시

「주차장법」제4조, 제4조의2제3항, 「서울특별시 증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제1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증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·고시합니다.

2020. 4. 16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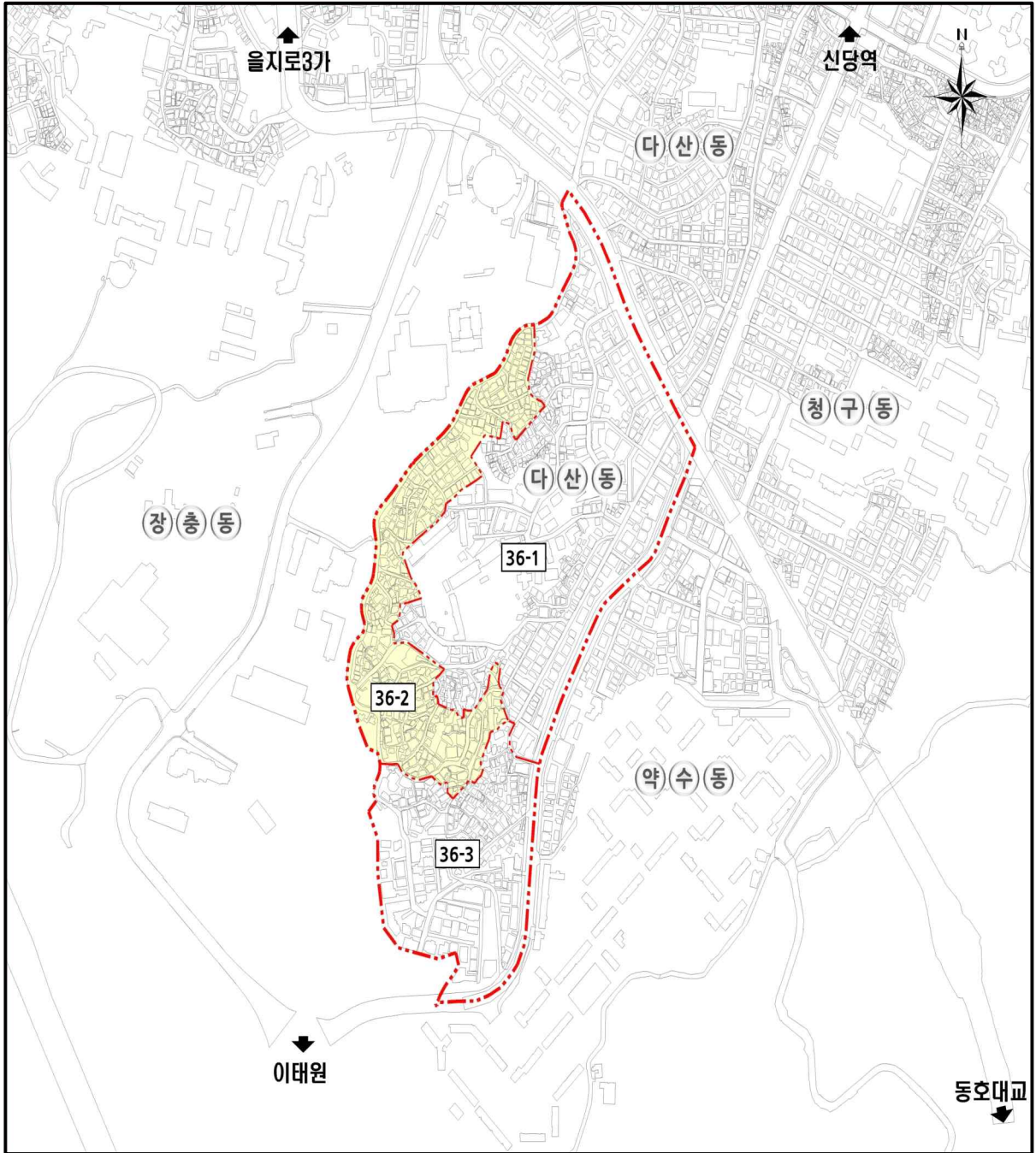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증구청장

1.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구역 : 1개 구역(주차장 확보율 49%)
 - 다산동 36-2구역
2. 지정기준(주차장 확보율 70%미만)
 - 노상불법주차가 심각한 주택가 지역(다세대, 다가구 밀집지역)
 -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으로서 주차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
 - ※ 주택(도시환경)정비사업 예정구역 제외
3. 위치도 : 붙임 도면 참조
4. 시행일 :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.

붙임 : 지정구역 위치도 1부. 끝.

붙임)

중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구역 위치도



【다산동 36-2블럭】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-44호

도로명주소 부여고시

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4월 16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기준
		도 로 명 고시일	도 로 명 부여기준
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51-10외 1 필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1길 36	2020. 4. 16.	퇴계로71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 6. 30	퇴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3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 (www.junggu.seoul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 고시 후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-45호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4월 16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도로명주소	지번주소	폐지일자	폐지사유
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1길 36	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51-10	2020. 4. 16	건물 말소
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1길 34-1	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51-133	2020. 4. 16	건물 말소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3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.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20-302호

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

국토교통부로부터 「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2차」(버스승차대 12개소 광고영업권 보상)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,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.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020. 4. 16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- 사 업 명 :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2차
(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~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 복선전철 건설)
- 사업시행자 : 국토교통부, 에스지레일주식회사
- 열람기간 : 2020. 4. 16. ~ 2020. 4. 30.
-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
 - 중구청 가로환경과 [서울특별시 창경궁로 17 (예관동, 본관7층)], ☎ 02-3396-6022
- 의견제출기간 : 2020. 4. 16. ~ 2020. 4. 30.
-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
 -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125-1번지 일대 광고판 12기
(서울역 버스환승센터 내 버스승차대 12개소 광고영업권)
 - 보상대상자 : 주식회사 케이아이엠지 [(주)KIMG]
- 기 타 :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.